



재정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실무위원회 규정

제 정 일	2018.12. 1
개 정 일	2019. 4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산학협력단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등에서 지원되는 국고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수혜방지 실무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육부 등 국고로 집행되는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한다.
- 제 3조 (위원회) 재정지원사업 중복 집행 방지를 위해서 산학협력단은 국고 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실무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구성한다. (개정 2019. 4. 1)
- 제 4조 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재정지원 사업 관련 부서의 과장, 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. (개정 2019. 4. 1)
- 제 5조 (회의소집) 재정지원사업 수행부서는 사업 실행계획 및 참여 학생명단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재정지원 사업 중복수혜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4. 1)
- 제 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재정지원 사업 중복수혜 관련 사항
 2. 중복수혜 사항의 조정
 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7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제 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